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법률이 보장하는 평등한 기회

연방 재정지원 수혜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관련 의학적 상태, 성별 관련 고정관념, 트랜스젠더 여부 및 젠더 정체성 포함), 출신 국가(영어 구사능력 포함), 연령, 장애, 정치적 성향, 신념, 혹은, 시민권 소지 여부 또는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제1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에 의거하는 WIOA 제1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신청 또는 참가 여부를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는 법에 위배됩니다.

연방 재정지원 수혜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요청을 받을 경우 장애인에게 유자격 전문가의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귀하가 WIOA 제1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차별을 인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혜자의 기회균등 담당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고용개발부(EDD) 또는 노동부의 민권센터(CRC)에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qual Opportunity Officer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PO Box 826880, MIC 83
Sacramento, CA 94280

또는

Director, Civil Rights Center (CRC),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N–4123
Washington, DC 20210

민원은 이메일로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DD는 **EEOmail** (EEOmail@edd.ca.gov)로, 노동부는 **Civil Rights Center** (dol.gov/crc)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수혜자가 서면으로 *최종조치 통지*를 발행하는 날 또는 90일이 경과한 시점 중 빠른 날 이후에 CR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기 주소를 참조).

귀하가 민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수혜자가 90일이 경과하도록 *최종조치 통지*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가 해당 통지를 발부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CRC에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즉 수혜자에게 민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CRC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귀하의 민원에 대한 *최종조치 통지*를 귀하에게 발부했으나 귀하가 수혜자의 결정 또는 해결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CRC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십시오. 단 최종조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RC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EDD는 평등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은 추가 보조 및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및/또는 문서 외 형식을 요청하는 경우 1-866-490-8879(음성)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TY 사용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번)로 전화하여 주십시오.